# 비영리민간단체 국제누가회

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 (명칭) 본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"국제누가회" (이하 "단체" 라한다)이라 하며, 영문명은 "Luke Care Global (축약어 LCG)"이라 칭한다.
- 제2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. 해외사역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경우에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- 제3조 (목적) 본 단체는 국내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질병과 빈곤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외 주민들을 위해 의료, 교육, 상담 및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,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 (사업) ①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, 영적으로 안녕되게 하는 사업
  - 2. 질병 예방 및 치료와 교육 사업
  - 3. 상담, 자문과 지원의 사업
  - 4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  - ② 제1항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    - 1. 관련 국가와의 민간 교류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주관, 주최하는 국내. 국내외 의료, 보건, 교육 분야의 사람들을 위한 일반여행사업
    - 2.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
    - 3.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업
    - 4. 회관, 훈련원, 수련시설 등 시설의 설치, 관리 사업
    - 5. 현장과 관련된 행사 추진에 관한 사업
    - 6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위탁교육 및 사업
    - 7. 국내외 교육훈련생을 위한 장학사업
    - 8.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    - 9. 현지 주민을 위한 병원, 의원, 보건소, 의료시설 설립 및 운영 사업 10. 유관단체와 연합사업 및 행정과 재정지원 사업

### 제2장 회 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 본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.

#### 1.정회원:

- ① 정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본인의 핸펀, 이메일, 집주소 및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자로 한다.
- ②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의사를 단체에 문서, 카톡, 또는 구두로 제시해야 한다.
- ③ 정회원의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며,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정회원은 총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불 참시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.
- 2. 후원회원: 제3조의 단체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 기적으로 단체를 후원하는 이들을 후원회원으로 둘 수 있다.
  - ① 후원회원은 후원절차(후원약정 및 후원회원약정서 작성 등)를 마치거나 후원(현금, 현물 등)행위를 통해서 후원회원이 된다.
  - ②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후원회원 의사를 단체에 제시해야 한다.
  - ③ 후원회원의 자격, 후원회비 등은 제한이 없으며 후원의 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.

### 제6조 (회원의 권리)

- ① 정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 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#### 제7조 (회원의 의무) 각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1.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(정회원, 후원회원)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(정회원, 후원회원)
-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(정회원, 후원회원)

# 제8조 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- ① 각 회원(정회원, 후원회원)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를 표시함으로 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정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③ 각 회원(정회원, 후원회원)이 탈퇴 및 제명, 후원 중단 등으로 인하여 회원 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#### 제3장 임 원

#### 제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- ① 본 단체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이사 40 인 이내.(단,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)
- 2. 이사 중 대표 1인
  - 3. 감사 2인
  - 4. 부대표 10인 이내
-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대표를 포함한다

#### 제10조 (대표)
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대표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.
- ② 대표는 단체를 대표하며 본 단체의 모든 정관상 사업을 통괄하고 수행하며 총회 의장과 대표단의 의장이 된다.
- ③ 대표 유고시에는 부대표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10-1조 (부대표)

- ①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단체의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자문하고 실행한다.
- ② 부대표에 관련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# 제11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이사,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 이사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12조 (임원의 선임방법)

-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고 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-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- ④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면하며 법인의 실무를 총괄한 다.

#### 제13조 (임원선임의 제한)

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9조의

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#### 제14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### 제15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 외한다)을 처리한다.

#### 제16조 (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)
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, 대표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 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표가, 대표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대표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# 제17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- 1. 단체 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- 5.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-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### 제4장 총 회

제18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19조 (구분 및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,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의장이

된다.
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경과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20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-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- 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 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## 제21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②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⑤ 사업계획의 승인
- ⑥ 기타 중요사항

#### 제22조 (의결정족수)
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의장에게 서면 또는 카카오톡같은 온라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
### 제23조 (의결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단

#### 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# 제5장 이 사 회

제24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1. 단체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4. 임원의 임·면에 관한 사항
- 5. 사업에 관한 사항
-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- 7. 사무소, 지부, 분사무소, 부설기관(연구소 등), 부대표, 대표단의 세부규 정에 관한 사항.
- 8. 기타 이 단체의 운용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# 제25조 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온라인 화상회의 출석 도 인정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26조 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단체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27조 (회기)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28조 (이사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 제29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- 제30조 (서면. 화상회의) 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써 의결할 수 있다.
- 제31조 (운영위원회와 사무국)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에 대해 대표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수행하며 운영내규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. 운영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운영내규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있다.

### 제6장 재산과 회계

# 제32조 (재산의 구분)

- ① 단체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2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'별지1'과 같다.

#### 제33조 (재산의 관리)

- ①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② 본 단체가 매수, 기부체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34조 (재산의 평가) 본 단체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- 제35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 본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기부

금, 모금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
#### 제36조 (회계의 구분)

- ① 본 단체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- 제37조 (회계원칙) 본 단체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38조 (회계연도)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# 제39조 (회계보고)

- ① 단체의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.
-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- 제40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 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'장기차입금' 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 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
- 제41조 (임원의 보수 제한 등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# 제42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
- ① 본 단체의 재산은 본 단체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- 1. 이 단체의 설립자
  - 2. 이 단체의 임원
  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- 4. 이 단체와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단체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### 제7장 보 칙

- 제43조 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4조 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 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45조 (해산)

- ① 본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 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가단체에게 귀속한다.
- 제46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감독관철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- 제47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- 제48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매일경제신문(일보)에 공고하여 행한다.
  - 1. 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.
  - 2.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 사회에서 의결한 사항

#### 부 칙

- 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 (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) 본 단체의 설립 당시 임원 및 임기는 "별지2"와 같다.
- 제4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이 개정 정관은 관계부서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.